

[서식 예]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

피 고 △ △ 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20〇〇년도 〇월 수시분 취득세 〇〇〇 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소재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○ ○년도 ○월 수시분 취득세 금○○○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, 원고는 피고 의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행정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 당한바 있습니다.
- 2.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는 원고가 1년 전에 홍수로 멸실 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여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의하여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



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건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등기사항증명서1통1. 건축물관리대장1통1. 소장부본1통1. 납 부 서1통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제소기간 | ※ 아래(2) 참조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청 구 인 | 피처분자 | 피청구인 |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|
| 제출부수 |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 | 관련법규 | 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 |
| 비 용 | 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| | |
| 불복방법 및 기 간 | 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 | | |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